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97
----------	-----

2016. 6. 23.(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6월 14일

-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직제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기구 조정 (안제5조)

- 직제 조정 : 혁신도시관리본부 (국 단위, 한시)

→ 정무부지사 직속, 혁신도시관리본부 (과 단위, 상시)

○ 분장사무 조정 (안제13조2)

-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의 분장사무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한시기구였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 단위 상시기구로 하여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직제를 조정하며, 분장사무 제13조2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의결 연월일	2016년 월 일 (제348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7
----------	-----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직제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조정 (안제5조)
  - 직제 조정 : 혁신도시관리본부 (국 단위, 한시)  
→ 정무부지사 직속, 혁신도시관리본부 (과 단위, 상시)
- 분장사무 조정 (안제13조2)
  -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의 분장사무 삭제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u>	<u>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u>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u>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u>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u>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u>
제13조의2(혁신도시관리본부) <u>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 6. (생략)</u>	<u>&lt;삭제&gt;</u>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